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설치한 미래문화전략팀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면서, 미래문화전략팀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예술인의 복지 및 권리 보장에 관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예술인 지원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양성평등정책담당관·미래문화전략팀장”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미래문화전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분석팀장”을 “정책분석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5호, 제6호,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5. 중·장기 전략의 수립·관리

6. 정책의제의 관리 및 점검

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19. 일자리정책 총괄

제8조제6항 중 “지역문화정책과”을 “지역문화정책과·예술인지원팀”으로, “보한다”를 “보하고, 예술인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남북 문화교류협력 총괄

19.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경제 정책 총괄

제8조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예술인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술인의 복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권익증진 및 예술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5.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관련된 업무

⑯ 지역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지역문화의 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연구의 지원
7. 지방문화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9.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1. 생활문화 동호회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2. 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관련된 업무

⑰ 문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미술관·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3.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4. 국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협의 및 공립·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육성 및 지원
5. 박물관·미술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6.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운영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박물관·미술관 관련 단체 육성·지원 및 학예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
8.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9.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건립의 지원
10.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기반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⑱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도서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서 등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사서 관련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관련 법인·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8.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지원
9. 작은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지원
10. 도서관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2.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13.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예술인지원팀은 2025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예술인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예술인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예술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기획조정실) ① ~ ④ (생략)	제7조(기획조정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조정실에 기획혁신담당관·재정담당관·규제개혁담당관·정보화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미래문화전략팀장 및 정책분석팀장 각 1명을 두되, 기획혁신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재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미래문화전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 ----- ----- <u>양성평등정책담당관</u> ----- ----- ----- ----- ----- ----- ----- ----- ----- <u>정책분석팀장</u> ----- ----- ----- ----- -----.
⑥ 기획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u>중·장기 전략의 수립·관리</u>
<신설>	6. <u>정책의제의 관리 및 점검</u>
7. ~ 17. (생략)	7. ~ 17. (현행과 같음)
<신설>	18. <u>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u>

<신 설> 20. ~ 21. (생 략) ⑦ ~ ⑩ (생 략) ⑪ 미래문화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중·장기 전략의 수립·관리 2. 정책의제의 관리 및 점검 3. 남북문화교류협력 총괄 4.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정책의제에 대한 문화적 대안의 수립·종합 및 조정 5.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⑫ (생 략)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⑤ (생 략) ⑥ 문화예술정책실에 문화정책과·국어정책과·전통문화과·국제문화과·예술정책과·공연전통예술과·시각예술디자인과·문화예술교육과·지역문화정책과·문화기반과·도서관정책기획단을 두되, 문화정책과장·국제문화과장·예술정책과장·공연전통예술과장·문화예술교	된 업무 19. 일자리정책 총괄 20. ~ 21. (현행과 같음) ⑦ ~ ⑩ (현행과 같음) <삭 제> ⑫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지역문화정책과·예술인지원팀----- ----- ----- -----
--	--

육과장·지역문화정책과장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어정책과장 및 문화기반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전통문화과장 및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u>보한다</u>. ⑦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u>13.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u> 14. ~ 18. (생략) <u><신설></u> 20. ~ 35. (생략) ⑧ ~ ⑭ (생략) <u>⑮ 지역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u> 2. <u>지역문화의 특화발전에 관한 사항</u>	----- ----- ----- ----- ----- ----- ----- ----- ----- ----- <u>보하고, 예술인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 ⑦ ----- -----. 1. ~ 12. (현행과 같음) <u>13. 남북 문화교류협력 총괄</u> 14. ~ 18. (현행과 같음) <u>19.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경제 정책 총괄</u> 20. ~ 35. (현행과 같음) ⑧ ~ ⑭ (현행과 같음) <u>⑮ 예술인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예술인의 복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u> 2. <u>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u>	3. <u>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u> 4. <u>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u> 5. <u>문화·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u> 6. <u>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연구의 지원</u> 7. <u>지방문화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8. <u>지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문화재단에 관한 사항</u> 9. <u>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u> 10. <u>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u> 11. ~ 25. 삭제 <u>26. 생활문화 동호회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u> 27. <u>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u> 28. <u>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관련된 업무</u> <u>⑯ 문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사항</u> 3. <u>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4. <u>예술인의 권익증진 및 예술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u> 5. <u>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u> 6. <u>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관련된 업무</u> <u>⑰ 지역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	---	--	--

1. 박물관·미술관·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3.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4. 국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협의 및 공립·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육성 및 지원 5. 박물관·미술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5의2.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운영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조정 6. 박물관·미술관 관련 단체 육성·지원 및 학예사 등 전문인력 양성 7.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8.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 9.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지역문화의 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연구의 지원 7. 지방문화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9.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2. 생활문화 동호회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3. 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관한 사항 ⑰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도서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서 등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의2. 사서 관련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관련 법인·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7.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지원 8. 작은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지원 9. 도서관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과 관련된 업무 ⑰ 문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미술관·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3.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4. 국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협의 및 공립·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육성 및 지원 5. 박물관·미술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6.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운영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박물관·미술관 관련 단체 육성·지원 및 학예사 등 전문인력 양성 8.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9.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	--	--	---

11. <u>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u> 12. <u>국립장애인도서관과 관련된 업무</u> <u><신 설></u>	<u>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u> 10. <u>폐산업시설 등 유희시설을 활용한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u> ⑱ <u>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u> 2. <u>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u> 3. <u>도서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4. <u>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u> 5. <u>사서 등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u> 6. <u>사서 관련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u> 7. <u>도서관 관련 법인·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u> 8. <u>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지원</u> 9. <u>작은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지원</u> 10. <u>도서관정보화 및 협력망 구</u>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미래문화전략팀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미래문화전략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획행정담당관이 그 사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u>	<u>측과 개선에 관한 사항</u> 11. <u>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u> 12. <u>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u> 13. <u>국립장애인도서관과 관련된 업무</u>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u><삭 제></u>
--	---	---	---